[별표 1] 2025년 01월~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5.1.1.적용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4년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5년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증가액	236,500	213,800	29,900	28,800	25,400	13,7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방문당 시간	24년 수가	24년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본인부담
30분	16,630	2,495	16,940	2,541
60분	24,120	3,618	24,580	3,687
90분	32,150	4,877	33,120	4,968
120분	41,380	6,207	42,160	6,324
150분	48,250	7,238	49,160	7,374
180분	54,320	8,148	55,350	8,303
210분	60,530	9,080	61,670	9,251
240분	66,770	10,016	68,030	10,205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가족요양비용감소)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수가 동결)

구 분	24년 수가	24년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12,701	86,480	12,972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11,451	77,970	11,696
차량 미 이용	47,670	7,151	48,690	7,304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면제
기타 의료수급권자	7.5%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0.90%
저소득층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에 관한 고시 해당자)	0.60% / 0.40%